

3. 무역협정 - FTA

□ 협상 내용

일 자	내 용
2008년 6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08년 9월 25일	한-터키 FTA 제 1차 공동연구 회의 (서울)
2009년 3월 26일	한-터키 FTA 제 2차 공동연구 회의 (앙카라)
2009년 5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2010년 4월 26일 ~ 30일	한-터키 FTA 제 1차 협상 (앙카라)
2010년 7월 19일 ~ 23일	한-터키 FTA 제 2차 협상 (서울)
2011년 3월 7일 ~ 11일	한-터키 FTA 제 3차 협상 (앙카라)
2012년 3월 7일 ~ 10일	한-터키 FTA 제 4차 협상 (서울)
2012년 3월 26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2012년 8월 29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2년 11월 22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http://www.fta.go.kr>

- 2012년 8월 1일자로 한 터키 FTA가 타결되었으며, 2013년 1월부로 발효를 목표로 두고 있음. 상품분야는 전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될 것이며, 이후 서비스와 투자 및 기타 분야는 상품분야 발효 후 1년 내 체결할 방침. 국내에서는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 터키에서는 농수산물 등의 식품 분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함.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구 분	양허단계	한국 양허				터키 양허			
		품목수	비 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 중	수입액	비 중
농 산 물	즉시철폐	194	9.9	3.5	8.1	479	18.4	4.8	68.5
	5년	201	10.3	17.9	40.8	62	2.4	0.3	4.2
	5년 이내 (누적)	395	20.2	21.4	48.9	541	20.7	5.1	72.7
	7년	21	1.1	2.1	4.9	34	1.3	0	0.0
	10년	609	31.2	18.8	42.9	801	30.7	1.7	24.1
	10년 이내 (누적)	1,025	52.5	42.4	96.7	1,376	52.7	6.8	96.8
	RD	134	6.9	0.2	0.6	175	6.7	0.0	0.5
	양허제외	795	40.7	1.2	2.7	1,060	40.6	0.2	2.7
	E(Standstill)	599	30.7	1.1	2.5	748	28.6	0.1	1.6
	NS	180	9.2	0.0	0.2	312	11.9	0.0	1.1
	R	16	0.8	0.0	0.0	N/A	N/A	N/A	N/A
농산물 소계		1,954	100.0	43.9	1,000	2,611	100.0	7.1	100.0

*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07-09년 평균 수입액 기준.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6일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2011년 한-터키 교역 : 59억 달러 (수출 51억, 수입8억 달러)

- 양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이내 약 100% 관세 철폐 달성.

*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

□ 농수산물

-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 달성.

우리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쇠고기, 닭고기, 신선 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 (품목 수 기준 40.7%)라고,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 부분 감축, 장기관세 철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 양허 대상제외 및 현행 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 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포도, 갑오징어, 고추, 꿀, 넘치, 마늘 등에 대해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관세 부분 감축

- 민감 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유지.
- 사료용조제품(10%감축, 50.6%→45.5%), 소라(20%감축, 20%→16%), 기타 포도주(30%감축, 15%→10.5%)

- 우리는 對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커피(총 對터키 수출액의 55%차지)를 즉시 철폐하고, 수출 잠재력 품목인 김치, 면류(라면, 당면, 국수), 소주에 대해 즉시 철폐 확보.

<한-터키 FTA 주요 수출입 농수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양허(對터키 주요 수입품)			
	품목명(HS 10단위)	관세율(%)	수입(천\$)	우리 양허
1	잎담배(오리엔트종)	20	6,379	10
2	기타조제어류	20	6,325	5
3	잎담배(오리엔트종)	20	3,205	10
4	해바라기씨유	10	3,120	5
5	밀가루	4.2	2,648	10
6	참다랑어(피레트)	10	2,601	5
7	헤즐너트	8	1,837	7
8	채소주스	30	1,812	10
9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8	1,409	5
10	참다랑어(냉동)	10	1,076	5
	(10대 수입 소계)		30,412	
	농수산물 수입 합계		43,886	

순위	우리양허(對터키 주요 수입품)			
	품목명(HS 10단위)	관세율(%)	수입(천\$)	우리 양허
1	기타커피	9	3,858	0
2	기타담배	25	702	10
3	잎담배(황색종)	25	592	10
4	기타제조담배	16.6	381	0
5	고등어	53	356	10
6	청어	53	208	5
7	면류(기타 파스타)	6.4	159	0
8	기타제조담배	16.6	147	0
9	한천	무세	101	0
10	기타주스	58.5	96	0
	(10대 수출 소계)		6,600	
	농수산물 수출 합계		7,062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6일

<한-터키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양허		양허 유형	터키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품목
파스타, 토마토 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획물, 밀(사료용)	194	즉시 철폐	479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초콜렛(속을채운 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5년 철폐	62	밀의굴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 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21	7년 철폐	34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시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609	10년	801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보조사료, 코코아분말,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압, 아귀, 가오리	134	RD	175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전복, 밤, 잣, 대추, 호두	599	E	748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기타궤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NS	312	닭고기, 유장, 치즈, 벼
쌀	16	R	0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6일